



소득세 확정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 방법

송재만
(소신중계원 경리계장)

소득세 확정 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

소득세는 소득 계산기간을 1월 1일에서 12월 21일까지로하여 과세하므로 1년이 지나면 소득 금액과 세액을 확정적으로 계산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매년 2월 한달은 지난해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확정 신고에 의하여 중간에납된 소득세를 정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는 기간이라 하겠다. (76년도분 신고는 77년 4월말까지로 예정)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자연히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만 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조세 채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확정신고납부를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확정신고의 법적효과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할자(소득세법 제 100)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자는 익년 2월 1일 부터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과세표준 확정 신고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의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때에도 위의 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자.

원청 징수로서 소득세가 완납되는 소득자와 자산소득만이 있어 주된 소득자에 합산되어 신고하는자등 다음 각호중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 가, 종합소득증 근로소득만 있는자.
- 나, 퇴직 소득만이 있는자.
- 다,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 대상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자.
- 라,가와 나의 소득만 있는자.
- 마, 라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산합산가족에 해당되나 주된 소득자가 아닌자.
- 바, 퇴직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합산 대상가족에 해당되나 주된 소득자가 아닌자.
- 사, 가. 나. 다. 의 소득자만있는 자산합산 대상 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자.
- 아, 분리과세 이자 및 분리과세 배당 소득만 있는자.
- 자, 아의 소득은 원천 징수로서 소득세가 완납되므로 근로 소득자, 퇴직소득자, 자산소득만이 있는 합산대상 가족으로서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나 분리과세 배당소득이 있는자.

위의 근로소득만 있는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퇴직 소득이 있는자는 원청 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므로서 확정신고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 신고서류 신고서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세액감면 신청서,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청서류등 필요한

신청서나 필요한 증빙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확정신고를 할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과세표준 확정 신고소득 금액계산 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의 공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공제 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2.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3. 복식기장 의무자의 경우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 시산표와 그부속서류.
4. 필요경비 또는 수입금액 산입 명세서.
5.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때에는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
6. 공동소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소득분배 계산서.
7. 이월 결손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한 경우 이월 결손금명세서.
8.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된소득자의 주소, 성명과 자산소득을 명시한 명세서.

(참 고 사 황)

확정신고는 이상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제출된 신고서 기타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을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첨부서류가 미비되었더라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와 소득 금액 계산서만 제출되면 유효한 신고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만 복식기장 의무자의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합계잔액 시산표가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로 본다.

(4)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분 계산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산립소득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1.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2. 동소득금액의 합계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 퇴직, 양도, 산립 소득의 과세표준계산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같음.

라. 과세표준제의 소득

1. 비과세소득
2. 일용 근로자의 급여
3. 지상 배당소득
4. 분리과세 이자소득
5. 분리과세 배당소득

2. 세액계산 순위 (소득구분별 계산)

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나.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세액

다. 총결정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라. 추가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5) 소득 금액의 계산

소득구분	소득종류	소 득 금 액
종합 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총수입 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수입금액-(근로소득공제+상여 특별공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퇴직 소득		1. 근로퇴직 수당 총수입금액 × $\frac{25}{100}$ - 퇴직소득공제 2. 기타 퇴직급여 (갑, 을, 종) 총수입금액 × $\frac{50}{100}$ - 퇴직소득공제
양도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양도소득 공제액+양도소득특별공제)
산립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산립소득 특별공제

용 어 해 석

1.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을 거주자 별로 합산한것을 말한다.
 - 가. 이자소득: 국가, 지방 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으로 부터 받은 이자 및 신탁의 이익.
 - 나. 배당소득: 내국법인 사단, 재단기타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 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라. 사업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마.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외국선박 원양어업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이 근로의 댓가로 받은 급여 및 내국법인의

-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
- 바. 기타소득: 국내에서 사용되는 학술 예술상의 권리와 방송용 필름 테이프 등의 자산이나 산업상 또는 상업상, 과학상의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댓가로서 지급받은 사용료 임대료등의 댓가와 그 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을 말하며 퇴직 소득은 갑종퇴직소득 을종퇴직 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법제 4 조 3 항) 양도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아니하며 별도로 과세하게 된다.
4. 산림소득: 산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료 1

부로 일러 수입 및 지출

지		수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병아리 대	1,600,000	부로일러 판매	9,468,000
사 료 비	2,500,000	폐제도태 "	500,000
약품 방역비	700,000	계분 판매	300,000
인 건 비	1,200,000	공포대 판매	50,000
건물 상각비	250,000	기 타	200,000
기구 "	400,000		
수리 유지비	500,000		
연 료 비	378,000		
전 기 료	50,000		
비품 소모품비	760,000		
조세 공과	30,000		
기 타	150,000		
총 수입 ₩ 10,518,000			
총 지출 ₩ 8,518,000			
손 익 ₩ 2,000,000(이익)			

자료 2

산란계 육성시 비율및 수입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병아리대	1,800,000	폐계도태	250,000
사료비	2,300,000	계분	70,000
약품방역비	300,000	공포대 판매	30,000
인건비	700,000	초산란판매	1,000,000
건물상각비	50,000	기타	500,000
기구 "	120,000		
수리유지비	300,000		
연료비	350,000		
전기료	70,000		
비품소모품비	200,000		
기타	100,000		

총비용 ₩ 6,290,000

총수익 ₩ 1,850,000

손익 ₩ 4,440,000 (손실)

자료 3

산란계 수입및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사료비	2,000,000	계란판매	8,810,000
약품방역비	300,000	계분판매	120,000
	200,000	공포대 "	70,000
연료비	320,000	휴산계 판매	700,000
전기료	70,000	기타	500,000
인건비	830,000		
시설물상각비	30,000		
유지관리비	120,000		
조세공과	20,000		
여비	60,000		
기타	200,000		

총수입 ₩ 10,200,000

총비용 ₩ 4,150,000

손익 ₩ 6,050,000

자료 4

기타 소득

이자소득 ₩ 200,000

배당소득 ₩ 500,000

기타소득 ₩ 200,000

납부세액의 계산

(가) 종합소득

이 자 소 득 ₩ 200,000
 배 당 소 득 ₩ 500,000
 사 업 소 득 ₩ 3,610,000
 기 타 소 득 ₩ 200,000
 합 계 ₩ 4,510,000

배당세액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times \frac{\text{배당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text{비공개법인} \times 50\%$
 즉 $3,610,000 \times \frac{500,000}{4,510,000} \times 40\% \times 50\%$
 = ₩ 80,000

(나) 소득공제

기 초 공 제 ₩ 180,000
 배우자 공 제 ₩ 120,000
 부양가족공 제 ₩ 600,000 (5명)
 합 계 ₩ 900,000

바) 감면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50\%$
 즉 $923,200 \times \frac{3,610,000}{4,510,000} \times 50\% = 369,484$

(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가-나)

종합소득 ₩ 4,510,000
 -) 소득공제 ₩ 900,000
 과세표준 ₩ 3,630,000

사) 소득세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즉 $923,200 - (80,000 + 369,484) = 473,716$

(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300만원 초과 480만원 이하)
 $679,200 + (3,610,000 - 30,000,000) \times 40\%$
 산출세액 = 923,200

아) 기납부세액

없음

자) 방위세 과세표준 (산출세액의 10%)

즉, $923,200 \times 10\% = 92,320$

(마) 세액의 공제

배당소득 공제 (배당소득 50만원은 비
 공개법인으로 부터 받았음)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1. 소득세 ₩ 473,716
2. 방위세 ₩ 92,320

※ 가구번호		※ 관리번호	
(77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 납 세 번 호
	③ 주 소		⑤ 전 화 번 호
구 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계
소 득 의 종 류	⑥ 이 자 소 득 금 액	200,000	/
	⑦ 배 당 "	500,000	
	⑧ 부 동 산 "		
	⑨ 사 업 "	3,610,000	
	⑩ 근 로 "		
	⑪ 기 타 "	200,000	
	⑫ 계	4,510,000	
	⑬ 기 초 공 제 액	180,000	
	⑭ 배 우 자	120,000	
	⑮ 부 양 가 족 "	600,000	
	⑯ 장 해 자 "		
	⑰ 계 ⑬ + ⑭ + ⑮ + ⑯	900,000	
⑱ 소득공제부족액 (타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 ⑰-⑱)			
⑲ 과 세 표 준 (⑫-⑰)		3,630,000	토지 건물
			3,630,000

작성요령

1. ※란은 납세 의무자가 기입하지 아니한다.
2. (2)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하는납세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3. (6)내지 (11)의 소득금액란에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한다.
4. (13)내지 (17)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란에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 금액의 순위에 따라 해당란에 기입한다.
5. (18)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소득공제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6. (22)내지 (30)의 세액공제액은 해당란에 각각 기입한다.
7. (31)(32)세액공제액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초과함으로써 세액공제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퇴직소득 산출 세액 양도소득 산출 세액 산림소득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이경우에 (32)의 종합소득란의 세액공제 부족액은 (31)의 퇴직소득 금액란에 이월기입하며 같은 방법으로 세액공제부족액을 순차적으로 이월 기입한다.
8. (37)예정 신고 산출 세액은 토지등매매 차익예정 신고납부 또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때의 그 산출 세액을 기입한다.
9. (38)의 추가 납부 세액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않았거나 적게 신고함으로써 추가납부세액이 고지된 금액을 기입한다.
10.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소득의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때에는 그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연서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축산업 소득세액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 득 자	① 성 명			② 납세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 영업자납세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사 업 영 업 영 영 영	⑦ 감면사업			⑨ 감면받고자 하는 연도		1976년 1월 1일	간
	⑧ 기타사업					1976년 12월31일	
소 득 금 액 세	⑩ 축산감면소득금액	⑪ 기타소득금액	⑫ 기타과세소득금액	⑬ 종합소득금액 ⑩+⑪+⑫			
	3,610,000	900,000		4,510,000			
감 액 계 산	⑭ 종합소득산출세액	⑮ 비 율 ⑩÷⑬	⑯ 감면대상세액 ⑭ × ⑮	⑰ 감면비율		⑱ 감면세액 ⑯ × ⑰	
	923,200	0.8	738,969	50%		369,484	

소득세법 제106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977년 2월 일

신 청 인 인

세무서 서장 귀하

구비서류	① 소득구분 계산서 1통	수수료
		없 음

소득구분 계산서

소득명(축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제152조 규정)

① 소득발생내역	② 감면소득금액	③ 기타소득금액	④ 소득금액계	⑤ 참고
⑩① 부러일러판매	9,468,000		9,468,000	
⑩② " 폐제, 도태	750,000		750,000	
⑩③ 계 분 판 매	490,000		490,000	
⑩④ 공포대판매	150,000		150,000	
⑩⑤ 기 타	1,200,000		1,200,000	
⑩⑥ 초산란판매	1,000,000		1,000,000	
⑩⑦ 계 란 판 매	8,810,000		8,810,000	
⑩⑧ 휴산계판매	700,000		700,000	
⑩⑨ 이 자 소 득		200,000	200,000	
⑩⑩ 배 당 소 득		500,000	500,000	
⑩⑪ 기 타 소 득		200,000	200,000	
⑩⑫				
⑩⑬	22,568,000	900,000	23,468,000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소득세법제100조제4항제1호)

	소득자와의 관계	당해연도발생소득금액						소득공제내역		
		② 근로소득금액	③ 사업소득금액	④ 기타소득금액	⑤ 퇴직소득금액	⑥ 양도소득금액	⑦ 산림소득금액	⑧ 소득금액계	⑨ 명칭	⑩ 금액
⑩① ×××	본인		3,610,000	900,000				4,510,000	기초공제	180,000
									장해자공제	
⑩② ×××	처								배우자공제	120,000
⑩③ ×××	자								부양가족공제	120,000
⑩④ ×××	"								"	120,000
⑩⑤ ×××	"								"	120,000
⑩⑥ ×××	"								"	120,000
⑩⑦ ×××	"								"	120,000
⑩⑧	"									
⑩⑨	"									
⑩⑩ 합계	"		3,610,000	900,000				4,510,000		900,000

기타 신고서 유의 사항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이미 설명 한바와 같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 2월 1일 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월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약일까지가 신고 기간이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제출은 주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당시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지만 납세지(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 이후 2월말 사이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2월 말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납세지를 착오로 하여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신고는 유효한 신고가 된다. (국세기준법 43조)

이런 경우에는 소판외의 그 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이미 접수된 후에 알게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국세기준법시행령 24조)

확정신고 기한의 연장 및 수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장부 또는 서류가 멸손된 때나 권위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압수 또는 영치 된 때나 기타 불가 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104조 시행령 제 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때에 신고연장 승락을 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연장 승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될일수가 30일 이상인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신고의 연장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연장 하여야 할사유가 있으면 2회 이상 연장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국세기준법 제45조 법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당해 기재한사항을 수정한 신고서를 당초 신고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할수 있다.

謹 賀 新 年

대한양계협회